

스타트업 Exit 시리즈

(4) 회사 매각(M&A) 시, 변호사와 상의가 필요한 단계

안녕하세요. 정호석 변호사입니다.

회사 매각(M&A)에 대하여 제안을 받게 되면 기쁜 마음도 들지만, 그러한 제안이 얼마나 진지하고 확실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선불리 다른 사람과 상의를 하기도 어렵습니다. 그래서 창업자 분들은 매각(M&A) 제안을 받으면 주변에 회사를 매각(M&A)한 경험이 있는 지인 분들이나 회사의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의를 하고 진행 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얻습니다.

하지만, 회사를 매각(M&A)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매각 경험이 1-2 차례인 분들이 대부분이라 그 분들의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하는 것인지 일반적인 관행인지 의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. 또한, 기존 투자자분들도 직접 회사를 매각(M&A)한 것이 아니라 회사 매각(M&A) 과정을 지켜본 경우가 대부분일 뿐 아니라 창업자 입장에서 조언을 하기 보다는 자신의 펀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조언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.

그래서, 회사 매각(M&A)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, 매각(M&A)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비용만 지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. 아울러,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전문가도 자문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.

그래서, 이번에는 어떤 단계에서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받기 시작해야 하는지, 그리고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은 지 여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

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있고, 그 변호사가 M&A 분야에 경험도 많다면, 제안 즉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그동안의 투자 이력(Valuation 과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조건)에 따라 valuation 산정 시 고려할 사항, 기존 투자자들의 거부권을 포함한 매각 시 고려할 법률 이슈 등을 바로 정리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수 후보자와 협상 시에 유리하게 사용할 사정 등을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만약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대략적인 valuation 에 대하여 협의가 완료되고 termsheet 을 작성하거나 실사를 진행할 단계에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물론,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매각(M&A)이 확실시되는 상황이 아니므로 매각(M&A)과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보다는 termsheet 체결이나 실사 진행 단계와 관련한 자문을 먼저 받고, 그 이후 매각(M&A) 협상이 좀 더 구체화되면 그 때 더 깊은 자문을 받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.

그러면, 회사의 가장 중요한 event 인 매각(M&A)은 어떤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?

예전에는 대형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 외에는 매각(M&A) 자문을 하는 변호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. 하지만, 요즘에는 대형 로펌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나온 변호사들이 새로 설립한 부티크(boutique) 로펌들이 많이 있으므로 매각(M&A) 자문을 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면 굳이 법인의 규모를 따지지 않고 선택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

물론 많은 변호사들이 자신이 다 매각(M&A) 자문 경험이 많다고 하므로, 이걸 또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고민이 될 수 있는데, 주변에 해당 로펌 및 변호사와 함께 업무를 했던 창업가들, 또는 그들과 함께 일을 해 본 변호사들의 평가를 통해 검증할 것이 최선으로 생각합니다.

단순히 매각(M&A) 자문 경험 뿐 아니라 스타트업 업계와 회사의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스타트업 업체들과 유사 사업을 하는 회사들에 대해 자문한 경험이 많다면 창업가 분들이 좀 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겠습니다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,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. Copyright© 2020 SEUM Law.

정호석 변호사

Partner

hoseok.jung@seumlaw.com